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2. 9 선고 2022가단54624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C

피 고 D

변 론 종 결 2023. 1. 19.

판 결 선 고 2023. 2. 9.

## 주 문

1. 피고와 소외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20. 12. 1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F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2020. 12. 10. 접수 제3364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소외 F은 망인의 자녀이다.

나. 원고가 망인에게 2020. 10. 15. 11,000,000원, 2020. 11. 20. 14,000,000원을 대여하여 원리금 25,119,226원 및 그 중 원금 24,470,118원에 대하여 2021.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다. 한편 망인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망인은 2020. 12. 10. 피고와 사이에 위 지분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망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2 지분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

마. 망인이 2020. 12. 13. 사망하였고, 피고가 2021. 2. 26. 상속포기 신고를 하고 위 신고가 2021. 3. 4. 수리되어 F이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정보시스템운영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광양시청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2. 사해행위 성립 여부

가.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바(대법원 198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망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망인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망인을 상속한 F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 1) 명의신탁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등기상으로만 피고와 망인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었을 뿐 실제로는 피고가 운영하던 어린이집을 매각한 대금으로 매수한 것으로 피고가 단독으로 매수하면서 망인에게 1/2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던 것을 이 사건 증여계약을 통하여 그 실질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고(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등 참조),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특유재산 추정의 번복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6329 판결).

위 법리들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2015. 10. 29. 이 사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G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지급내역을 분명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피고가 매수자금 출처로

주장하는 ‘H어린이집’, ‘I어린이집’을 폐업하거나 매각한 때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망인이 2017. 2. 27.경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J조합으로부터 대출받았고(갑 제4호증), 이 사건 부동산 매수 후에 매수한 순천시 K 부동산은 피고 단독 명의로 등기한 점(을가 제20호증)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망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하게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 선의 항변

피고는, 망인이 2020. 1.경부터 L요양병원에 입원해서 M병원으로 항암치료를 다녔는데 당시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족면회가 차단되었고 2020. 12.초 망인이 N병원으로 옮긴 후에도 가족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여 여러 차례 설득 끝에 간신히 임종을 지켰는바, 망인의 원고 등에 대한 채무를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가 한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다240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망인의 경제적 사정을 잘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에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이루어졌고 피고가 아무런 대가 없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항변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허정룡

별지